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의 중요성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 불감과
조치 미비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를 사전에 막기 위하여 예방 컨설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박동기
대한산업보건협회
중대재해예방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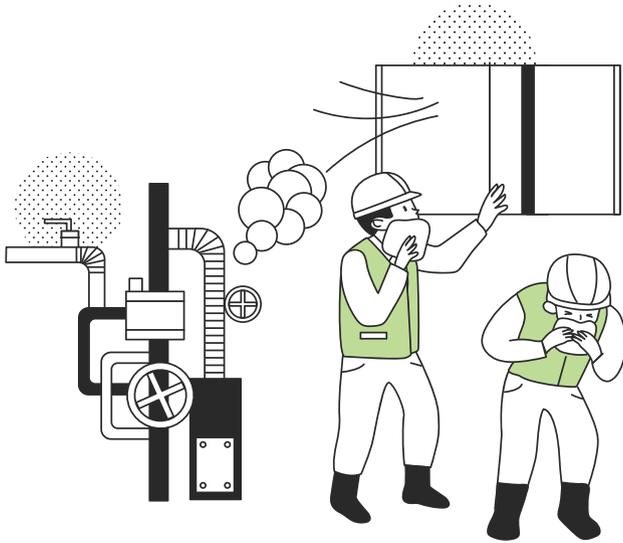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직업성 질병 사례

지난 2월 18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직업성 질병 사례가 발생했다. 문제가 된 경남 창원 두성산업(주)은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로서 제품의 세척 공정 중 노동자 16명이 세척제에 포함된 성분인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해 집단 급성 중독(독성 간염)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월 21일 회사 대표이사를 입건했다.

그리고 같은 날 경남 김해의 대흥알앤티에서도 동일 제조업체인 유성케미칼에서 납품한 세척제를 사용하다가 노동자 3명이 독성 간염 증상을 보였다. 임시 건강 진단 결과, 노동자 13명이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독성 간염으로 직업성 질병 진단을 받았다. 전처리 일부 공정에서 작업 시간을 고려한 노출 기준치의 4.7배에 달하는 트리클로로메탄 노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불감·시설 미흡이 부른 중대재해

두 사례의 원인은 판박이다. 휘발성이 강한 트리클로로메탄을 쓸 때는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해 인체에 기준치 이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는 사고 이전부터 성능이 미흡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주의 안전 불감도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이라면 위험성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안전의식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중대재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한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이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컨설팅이 선행되어야 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6가지 컨설팅

그렇다면 중대재해를 사전에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중대재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한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이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컨설팅이 선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반기별 1회 이상 점검)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업무상 질병 예방이 필요하다. 소음성 난청, 진폐증, 금속 및 중금속 중독, 유기화합물 중독 등과 같이 작업환경 중 유해인자와의 관련성을 분석해 직업병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또한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직무 스트레스 등 작업환경 중 유해인자와 복합 작용해 발생하는 직업병 및 직업 관련성 질병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업무상 질병 예방이 필요하다.

소음성 난청, 진폐증, 금속 및 중금속 중독, 유기화합물 중독 등과 같이 작업환경 중 유해인자와의 관련성을 분석해 직업병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셋째,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근거한 위험성평가 컨설팅도 병행되어야 한다. 먼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



중대재해예방실은 협회 사업총괄이사 직속 기구다.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사, 간호사 등의 직원으로 전담팀을 꾸렸다. 중대재해예방실을 중심으로 협회 지역본부와 센터가 유기적으로 중대재해 컨설팅을 진행하게 된다.

인지를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보완·개선해야 한다. 위험성평가는 매년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넷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한 화학물질 중독예방 컨설팅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톨루엔(toluene)·크실렌(xylene)·스티렌(styrene)·노말헥산(n-hexane)·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급성중독,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의한 급성중독, 그리고 고열작업·폭염 노출로 인한 열사병이 포함된다.

다섯째, 국소배기장치 시스템에 관한 컨설팅이 필요하다. 국소배기장치 성능검사 및 자체 검사, 국소배기장치 개선, 국소배기장치 설치 전 설계에 대한 검토 등을 점검해야 한다.

여섯째,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와 제112조에 근거한 MSDS 작성과 비공개 승인에 관한 사항도 컨설팅을 통해 검토해야 한다.

국소배기장치 시스템에 관한 컨설팅이 필요하다.

국소배기장치 성능검사 및 자체 검사, 국소배기장치 개선,

국소배기장치 설치 전 설계에 대한 검토 등을 점검해야 한다.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중대재해예방실을 전담조직으로 만든 이유

노동자의 생명을 존중하고 한 단계 발전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3월 1일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예방을 중심에 둔 ‘중대재해예방실’을 만들었다.

중대재해예방실은 협회 사업총괄이사 직속 기구다.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사, 간호사 등의 직원으로 전담팀을 꾸렸다. 중대재해예방실을 중심으로 협회 지역본부(6개)와 센터(19개)가 유기적으로 중대재해 컨설팅을 진행하게 된다.

협회가 진행하는 컨설팅은 사업장에서 손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업장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안전보건 매뉴얼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중대재해처벌법에 적합하게 바꿔준다. 또한 미흡하거나 수립되지 않은 내용은 사업장 특성에 맞게 작성·보완해 준다.

사업주와 노동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노와 사가 함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사업주와 노동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노와 사가 함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